법무부	보 도 자 료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	배포 즉시 보도	배포 일시	2022. 8. 5.(금)
담당 부서	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	책임자	과 장 이승현 (02-2110-4055)
		담당자	사무관 박지원 (02-2110-4067)

법무부,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!

-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 인턴 허용-

□ **법무부는 미래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**하기 위해 '22.8.8.(월) 부터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**외국인 첨단분야* 인턴 비자를 신설합니다.**

* 첨단기술의 범위 :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로 반도체, IT, 기술경영, 나노, 디지털전자, 바이오, 수송 및 기계, 신소재, 환경 및 에너지 등

□ 그동안 한국의 위상 제고로 **졸업 전 한국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요**와 국내 정보기술(IT)**기업이 외국인 재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수요**가 있었으나, 이를 허용하는 **비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인재확보에 어려움**이 있었습니다.

○ 기존에는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국내 인턴 활동이 허용되고,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학업과 관련된 인턴 활동이 가능했던 반면, **해외 대학 재학생의 경우 국내 기업 인턴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.**

□ 한편, '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'은 **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티에프(TF)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과제로 선정**되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규제심의기구*의 사전 검토를 마쳤습니다.

* 기업·학계·법조인 등 민간 전문가를 과제별 심의위원으로 배정 → 규제 개선방안 적정성 판단

○ 또한 전문인력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*에서도 **특히 인력 부족이 심각한** ** **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이 국내기업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 신설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.** ('21년 9월)

* 「전문인력유치지원 실무분과위」(위원장: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)는 「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」(위원장: 법무부 차관) 산하 전문분과로 해외 전문인력 유치 관련 부처 간 조율·협의 기능 수행

** 12대 주력산업(반도체, 바이오·헬스, IT비즈니스 등) 기술인력 부족인원 28,050명 ('20년 기준)

□ 이번 비자 신설을 통해, **잠재적 우수인재에게 한국기업 근무와 한국 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부여**하여 **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점**하고자 합니다. 또한, 미래 우수인재에게 **한국의 기술, 문화를 전파**하여 **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시에도 가교 역할**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○ 특히, 첨단분야 인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**국내 유학, 취·창업을 원하는 경우 비자 취득 요건을 우대**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및 중소·벤처기업 우수인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□ 다만, **이번 조치로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**, 기업은 **국민 고용인원의 20% 범위 내에서만 첨단분야 외국인 인턴을 채용**할 수 있습니다.

○ 반면, 국민 고용인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**중소·벤처기업*의 경우 기업 설립 후 3년까지 고용 제한을 유예**하여 **기업의 성장을 지원**합니다.

*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

□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**신성장 산업의 인력 문제 해소 방안을 적극 발굴**하고, **국가 성장을 지원하는 비자 정책을 마련**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 임 **첨단분야 인턴비자(D-10-3) 개요**

□ 개요

○ **(내용)**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**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에 대해 첨단기술 분야 국내 기업체에서 인턴**활동 허용

□ 적용 대상

○ **(초청 기관)** 첨단기술 분야* 종사 기업(기관)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
- **(민간기업)** ① **첨단기술 연구시설**을 갖춘 국내 **상장기업**, ②「기초연구법」에 따른 **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 전담부서)**를 갖춘 기업, ③「연구개발특구법」에 따른 **첨단기술 기업**으로 지정받은 기업, ④「벤처기업법」에 따른 **벤처기업**
- **(국공립 연구기관) 특정연구기관,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**

* 첨단기술의 범위 :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로 반도체, IT, 기술경영, 나노, 디지털전자, 바이오, 수송 및 기계, 신소재, 환경 및 에너지 등

※ **(국민고용보호)** 각 기관은 **국민 고용인원의 20% 범위 내**에서만 첨단분야 인턴 고용 가능 (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 3년간 고용 제한 적용 유예)

○ **(외국인)** 해외 우수대학*의 첨단기술 분야 전공 **재학생, 졸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**

* Time지(誌) 선정 세계 200대,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

□ 첨단기술인턴 체류지원 특례

○ **(체류 지원) 1회 부여 가능한 체류기**간 확대(현행 구직비자 6개월→1년), 인턴 급여 수령 허용(최저임금 이상)

○ **(유학, 취·창업지원)** 국내대학 유학 희망 시 제출 서류 간소화* 및 취업비자, 창업비자 변경 시 우대**

* 유학(D-2)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시 학력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면제 (표준입학허가서로만 심사)

** ❶인턴분야에 정식 취업하고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(GNI) 이상인 경우 특정활동(E-7) 자격 학력, 경력 요건 면제, ❷기술창업(D-8-4) 비자 점수제 가점 15점 부여(총 80점 이상인 경우 자격취득 가능)